

2013년도 학점은행제 신청·접수 계획 공고

2013년도 학점은행제 신청·접수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5일

국 가 평 생 교 육 진 흥 원 장

1 신청의 종류

신청코드	구분	세부내용	수수료
A1	학습자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 학점인정을 신청하거나 그 이전에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인적사항, 희망학위과정/전공 등 정보를 등록하는 절차 ▪ 최초 1회만 신청하면 완료되며, 학점인정신청과 동시 가능 	4,000원
A2	학점인정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점은행제로 인정되는 교육과정 이수, 자격취득 등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학점당 1,000원
A3	전공변경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위수여 이전에 학위과정/전공을 다른 학위과정/전공으로 변경하는 절차 	-
A4	학위연계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자가 다른 학위과정/전공을 추가로 학습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절차 	-
A5	재심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점인정신청 등에 따른 심의결과(학습구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절차 	-
A6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완료된 학습자등록 또는 학점인정에 대하여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하는 절차 ※ 기납부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음 	-
A7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점인정이 완료된 전공교양호환과목의 학습구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절차 ※ 전공교양호환과목 : 해당학습자의 전공에서 전공 또는 교양으로 인정이 가능한 과목 	-
A8	학위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 학위과정/전공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충족하여 학위를 수여받하고자 신청하는 절차 	-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등(A1~A7)

신청방법		신청종류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온라인	A1	학습자등록	1.2(수)~ 1. 31(목)	4.1(월)~4.30(화)	7.1(월)~7.31(수)	10.1(화)~10.31(목)	
	A2	학점인정신청					
	A3	전공변경신청	1.2(수)~1. 24(목)	4.1(월)~4.23(화)	7.1(월)~7.24(수)	10.1(화)~10.24(목)	
	A4	학위연계신청					
	A6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					
	A7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1.2(수)~1. 31(목)	4.1(월)~4.30(화)	7.1(월)~7.31(수)	10.1(화)~10.31(목)	
	방문	본원	A1	1.2(수)~1.15(화)	4.1(월)~4. 9(화)	7.2(화) ~ 7.15(월)	10.4(금)~10.14(월)
A2			학점인정신청				
A5			재심신청				
교육청		A1	1.2(수)~1.15(화)	4.1(월)~4. 9(화)	7.2(화) ~ 7.15(월)	10.4(금)~10.14(월)	
		A2					학점인정신청
		A5					재심신청
교육훈련 기 관	A1	학습자등록	'12.12.15(토) ~ '13.1.15(화)	4.1(월)~4.19(금)	6.17(월)~7.15(월)	10.1(화)~10.21(월)	
	A2	학점인정신청					
	A3	전공변경신청	현재 ~ '12.12.14(금)	3.20(수)~3.29(금)	6.1(토)~6.14(금)	9.20(금)~9.30(월)	
	A4	학위연계신청					
	A5	재심신청					
	A6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					
	A7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 온라인 : 신청페이지(www.cb.or.kr/personal)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 교육청 : 광역시 이상의 17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하단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확인 가능함.

※ 교육훈련기관 : 법령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아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홈페이지 [표준교육과정]→[교육훈련기관 검색]에서 확인가능함. **기관별 온라인/내방으로 접수하여 본원으로 이관하므로 각 기관으로 접수방법 등 문의필요.**

※ 방문접수시간 : 단, 각 접수장소별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바랍니다.

- 본원 : 평일(월~금), 09:00~17:00 (토·일, 공휴일 제외)

-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청 : 평일(월~금), 09:00~16:00 (토·일, 공휴일 제외)

📄 학위신청(A8)

구 분	신청방법	전기(2월)	후기(8월)
학습자 개별접수	온라인	'12. 12. 17(월) ~ 1. 15(화)	'13. 6. 17(월) ~ '13. 7. 15(월)
교육훈련기관 단체 접수	온라인	'12. 12. 1(토) ~ '12. 12. 14(금)	'13. 6. 1(토) ~ '13. 6. 14(금)

📁 학습자등록(A1)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등본의 증빙가능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원본 확인 후 사본 제출)
- 📍 온라인신청시 미제출

2.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증명하는 최종학력증명서

- 📍 학력별 서류종류

최종학력	최종학력증명서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포함)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1982년 1월 이후 졸업자는 홈에듀 민원서비스를 통해 무료 발급가능
대학(전문대학) 졸업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사실 확인)
대학 재적	재(휴)학 혹은 제적증명서 * 중퇴한 경우, 제적일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2개 이상 대학 이수 시	각 대학의 최종학력증명서


※ 대학원 제적 혹은 졸업증명서는 최종학력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음.

- 📍 서류제출 면제자(온라인만 해당)

최종학력	해당 학습자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포함)	학습자등록 온라인신청 페이지에서 본인이 입력한 고등학교 졸업 정보가 조회·확인된 학습자(1982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 정보활용 동의자)
대학(전문대학) 재적 이상	대학 최종학력증명서 온라인 첨부서비스가 제공되는 대학 재적(졸업)자(단, 결제 후 환불 불가)

3. 기타서류 : 해당자에 한함.

- 📍 간호·보건계열 학습자등록 신청자 : “면허(자격)증명서” 원본 제출(면허증 원본 제출 불가함. 임의 제출 시 반환되지 않음)
※ 면허(자격)증명서 발급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상단 [민원→의료인 면허 민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 아동학(아동가족) 전공 학습자등록 신청자 중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원 혹은 사도교육청 방문 접수하여 해당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제출
- 📍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경우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제출 서류는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게시판 간행물 ‘2012년 학점은행제 리플렛’ 참조

 학점인정신청(A2) : 학점원별 제출서류 참조

학점원		제출 서류										
평가인정학습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서류 없음. 										
자격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자격, 청소년지도사(1,2,3급), 신용분석사, 여신심사역, 국제금융역, 자산관리사 : 제출서류 없음 -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TEPS(1+,1,2+,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출력본(시스템 상에서 출력) • 자격확인(증명)서 • TEPS :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성적표 별도 첨부 ※ 이외 자격은 방문접수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 : 자격 사본 (원본 지참) ※ 자격 합격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음 										
학점인정대상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수 대학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 2개 이상 대학 졸업(제적)자는 각 대학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시간제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수 대학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서류 없음.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신청 페이지에서 이수과정이 확인되는 과목 : 제출서류 없음 - 온라인신청 페이지에서 이수과정이 확인되지 않는 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수 기관에서 발급한 과정이수확인서, 성적증명서 📍 방문 : 이수 기관에서 발급한 과정이수확인서, 성적증명서 										
중요무형문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가능 📍 등급별 증빙서류 										
		<table border="1"> <thead> <tr> <th>이수등급</th> <th>증빙서류</th> </tr> </thead> <tbody> <tr> <td>보유자</td> <td>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사본(원본지참)</td> </tr> <tr> <td>전수교육조교</td> <td>문화재청에서 발급한 조교증서 사본(원본 지참)</td> </tr> <tr> <td>이수자</td> <td>보유자가 문화재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원본 지참)</td> </tr> <tr> <td>전수생</td> <td>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전수교육확인서 * 양식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알림방→자료실 568번 '학습자 전수교육 확인서'] 탑재</td> </tr> </tbody> </table>	이수등급	증빙서류	보유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사본(원본지참)	전수교육조교	문화재청에서 발급한 조교증서 사본(원본 지참)	이수자	보유자가 문화재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원본 지참)	전수생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전수교육확인서 * 양식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알림방→자료실 568번 '학습자 전수교육 확인서'] 탑재
		이수등급	증빙서류									
		보유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사본(원본지참)									
		전수교육조교	문화재청에서 발급한 조교증서 사본(원본 지참)									
이수자	보유자가 문화재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원본 지참)											
전수생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전수교육확인서 * 양식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알림방→자료실 568번 '학습자 전수교육 확인서'] 탑재											

재심신청(A5)

- 🕒 강의계획서 원본 1부 필수
 - ※ 과목 이수 당시 증빙자료여야 하며, 학과장 이상의 날인이 요구됩니다.
- 🕒 본인이 재심 관련을 증빙하는 기타서류 제출 가능

그 외 신청(A3, A4, A6~A8) : 제출서류 없음

- 🕒 온라인 신청만 가능(팩스 및 사·도교육청을 통한 접수는 불가)
- 🕒 분기별 1회만 신청 가능

4 기타 유의사항

- ① 모든 신청은 신청시기에 신청종류별로 요구되는 모든 제반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출서류 최종 마감일까지 접수되지 않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신청처리가 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학습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② 본원에서 정한 신청방법 및 서류제출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취소 및 환불처리됩니다. 자주 발생하는 불인정처리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 학습자등록(A1)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학점인정신청(A2)을 한 경우
- ◆ 희망학위 및 희망전공 미가입 및 가입 오류된 경우
- ◆ 학점인정신청(A2)시 입력내역과 증빙서류 기재내역이 상이할 경우
- ◆ 온라인 또는 방문 등 접수를 하지 않고 증빙서류만 제출한 경우

- ③ 학점은행제 행정지원(증명서 발급 포함) 및 학습설계 등을 위해서는 학습자등록(A1) 및 학점인정신청(A2)를 가능한 빠른 시기에 신청해야 합니다.
 - ※ 학위신청(A8) 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에 학습자등록(A1)을 완료해야 합니다.
 - ※ 학습자등록(A1) 및 학점인정신청(A2)을 하지 않은 경우, 성적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 학위수여 이전 진학, 취업을 위해 요구되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증명서 발급신청일 이전에 학습자등록 및 일정학점(학사 100학점, 전문학사 40학점) 이상을 인정받아야 발급가능합니다.
- ④ 온라인 학점인정신청(A2) 과정에서 학습자 본인이 입력하는 과목명 및 학

점, 성적, 이수학기 등의 오입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지연 및 불가 등의 문제는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⑤ 대행업체(사설기관) 등을 통한 단체 및 대리접수는 불가합니다.
- ⑥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습니다.
- ⑦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점인정 혹은 학위수여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인정사실을 취소하며 고발조치될 수 있습니다.
- ⑧ 학습자 편의 또는 불가피한 사정의 발생으로 추후 접수일정 및 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학점은행제 홈페이지(<http://www.cb.or.kr>)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⑨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학점은행제 콜센터 상담담당자(☎ 1600-0400)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